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40호
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경미한변경)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-322호(2005.03.10.)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26호(2006.04.13.)로 정비구역지정 결정, 종로구공고 제2008-800호(2009.01.02.)에 의하여 돈의문뉴타운개발기본계획 변경 승인공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3호(2009.01.29.)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61호(2009.07.02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09-67호(2009.10.23.)로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변경)지정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59호(2015.06.11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83호(2016.09.08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(돈의문1구역)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호(2017.01.12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11호(2017.03.3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0호(2017.04.2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63호(2017.05.11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14호(2017.06.15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87호(2017.08.03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4호(2018.05.31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20호(2018.07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87호(2018.11.29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 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하고,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종로구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4월 9일
서울특별시장

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, 유형, 위치, 면적 및 지정목적(변경없음)

명 칭	유 형	위 치	면 적(㎡)	지정목적
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	중심지형	종로구 교남동 62-1 일대	167,844.4	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심기능 및 노후불량한 주거기능의 종합적 개선을 통한 직주근접형 도심 커뮤니티 공간 조성

2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(변경없음)
3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(변경없음)
4.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

1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

구 분		계		돈의문1		돈의문2		돈의문3		준치시설(도로)		비고
		면적 (㎡)	구성비 (%)	면적 (㎡)	구성비 (%)	면적 (㎡)	구성비 (%)	면적 (㎡)	구성비 (%)	면적 (㎡)	구성비 (%)	
합 계		167,874.2	100.0	152,198.6	100.0	6,801.4	100.0	8,844.4	100.0	29.8	100.0	-
택지 (획지)	소계	112,316.0	66.9	100,405.1	65.9	5,510.1	81.0	6,400.8	72.4	-	-	-
	주택 용지	95,648.8	57.0	95,648.8	62.8	-	-	-	-	-	-	-
	종교 시설	1,671.8	1.0	1,671.8	1.1	-	-	-	-	-	-	-
	상업 업무	14,995.4	8.9	3,084.5	2.0	5,510.1	81.0	6,400.8	72.4	-	-	-
정비기 반시설 등	소계	47,760.0	28.5	43,995.3	28.9	1,291.3	19.0	2,443.6	27.6	29.8	100.0	-
	공원	7,194.5	4.3	6,360.5	4.2	834.0	12.3	-	-	-	-	-
	녹지	1,043.0	0.6	1,043.0	0.7	-	-	-	-	-	-	-
	도로	26,868.8	16.0	24,061.3	15.8	457.3	6.7	2,320.4	26.2	29.8	100.0	-
	철도	(286.5)	-	-	-	-	-	(286.5)	-	-	-	입체적 결정 (면적 산입 제외)
	공공 공지	123.2	0.1	-	-	-	-	123.2	1.4	-	-	-
	광장	594.5	0.4	594.5	0.4	-	-	-	-	-	-	-
	공공 청사	2,893.5	1.7	2,893.5	1.9	-	-	-	-	-	-	-
	문화 시설	9,042.5	5.4	9,042.5	5.9	-	-	-	-	-	-	-
준치시설		7,798.2	4.6	7,798.2	5.2	-	-	-	-	-	-	-

주1) 철도는 종로구고시 제2019-159호를 반영한 사항임 (금회 변경 건물 철도 면적 중 입체적 결정 면적 286.5㎡에 해당됨)

- 2) 인구·주택 수용계획(변경없음)
- 3) 교육시설, 문화시설,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(변경없음)
- 4) 공원·녹지 및 환경보전계획(변경없음)
- 5) 교통계획(변경없음)
- 6) 경관계획(변경없음)
- 7)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구 분	구역명	면 적(㎡)	사업방식
총 계		167,844.4	
재정비 촉진 구역	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	152,198.6	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	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	6,801.4	
	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	8,844.4	

- 8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(변경없음)
 9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계획(변경없음)
 10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·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(변경없음)
 11)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(변경없음)
 12)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(해당없음)
 13)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(해당없음)
 14)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(해당없음)
 15)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(해당없음)
 16)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
 (1) 동의문1재정비구역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(변경없음)
 (2) 동의문2재정비구역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(변경없음)
 (3) 동의문3재정비구역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
 가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
구 분	구역의 명칭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기 정	동의문3재정비촉진구역	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원	8,844.4	

나) 정비계획

(가) 토지이용계획

구 분		면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합 계		8,844.4	100.0	
택 지	상업, 업무	6,400.8	72.4	
정비 기반시설 등	소 계	2,443.6	27.6	
	도 로	2,320.4	26.2	
	공공공지	123.2	1.4	
	철 도	(286.5)	-	입체적 결정(면적 산입 제외)

주1) 철도는 종로구고시 제2019-159호를 반영한 사항임 (금회 변경 건물 철도 면적 중 입체적 결정 면적 286.5㎡에 해당됨)

(나) 용도지역계획(변경없음)

(다)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

- ① 도로(변경없음)
 ② 공공공지(변경없음)
 ③ 철도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①	철도	도시철도(5호선) (서대문정거장)	종로구 평동 211 일대	6,361.6	건설부고시 제151호 (91.3.25.)	-

주1) 철도는 종로구고시 제2019-159호를 반영한 사항임 (금회 변경 건물 철도 면적 중 입체적 결정 면적 286.5㎡에 해당됨)

■ 도시계획시설(철도) 입체적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위 치	구 분	기정	최초 결정일	비 고
기정	②	철도	종로구 평동 213 일대	길이(m)	46.3~51.2	-	●종로구 평동 213번지 (281.1㎡) ●종로구 평동 219번지 (5.4㎡)
				폭(m)	5.4~7.0		
				높이(m) (해수면 기준)	26.31~39.61		
				면적(㎡)	286.5		

주1) 변경(정정)사유 : 종로구고시 제2019-159호 반영

- (라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해당없음)
- (마)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(변경없음)
- (바)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- (사)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(변경없음)
- (아)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(해당없음)
- (자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(해당없음)
- (차) 환경성검토결과(변경없음)
- (카)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(해당없음)

5. 동의문3재정비촉진구역 외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없음

6.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도서 참조 : 생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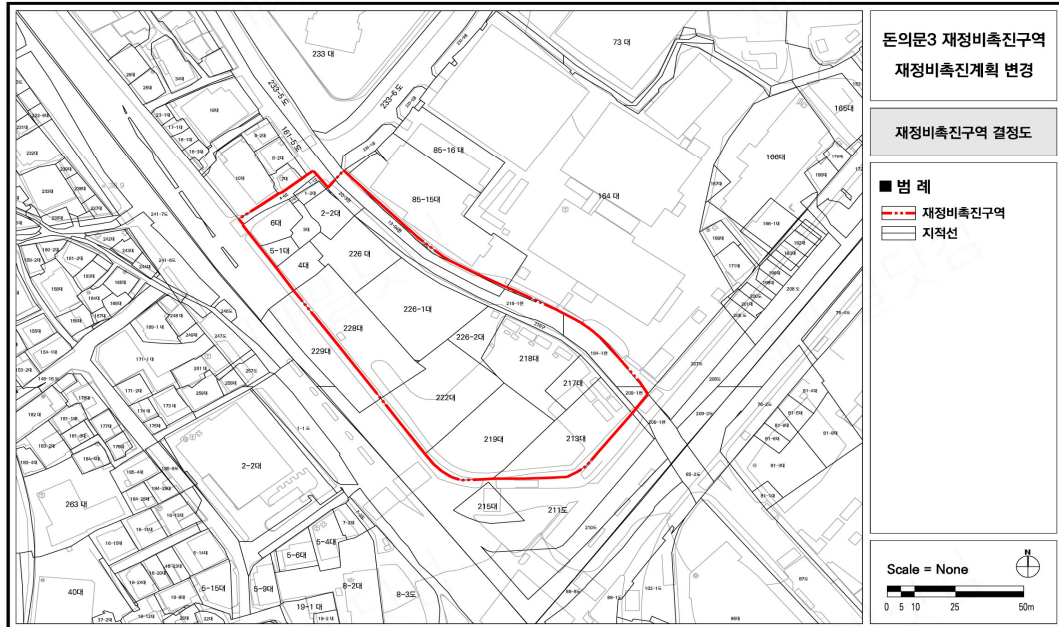
※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(☎02-2133-7218),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02-2148-2695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7. 지형도면의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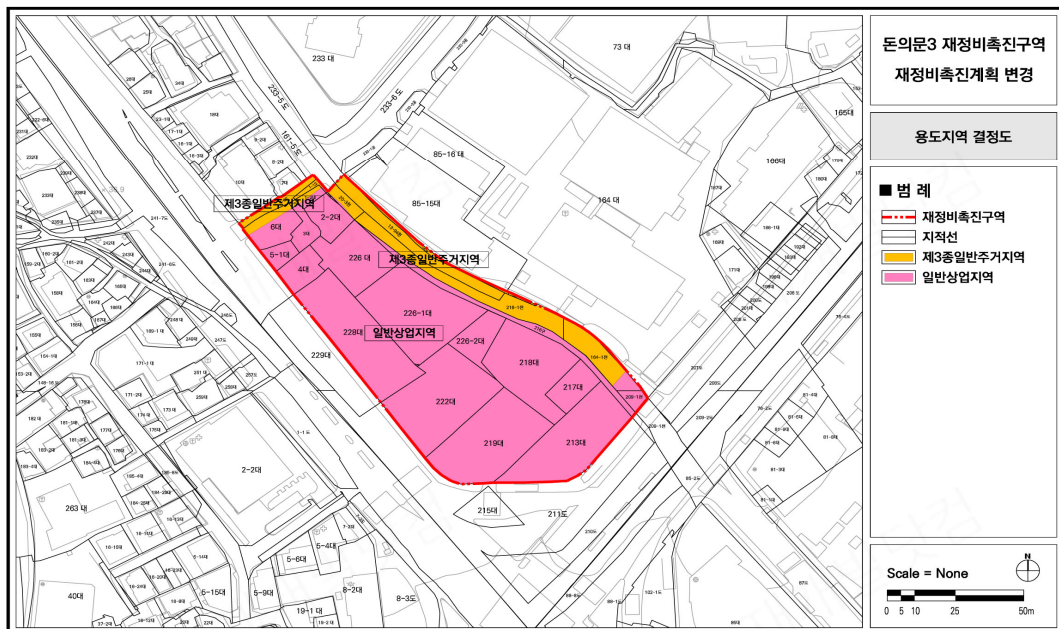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지형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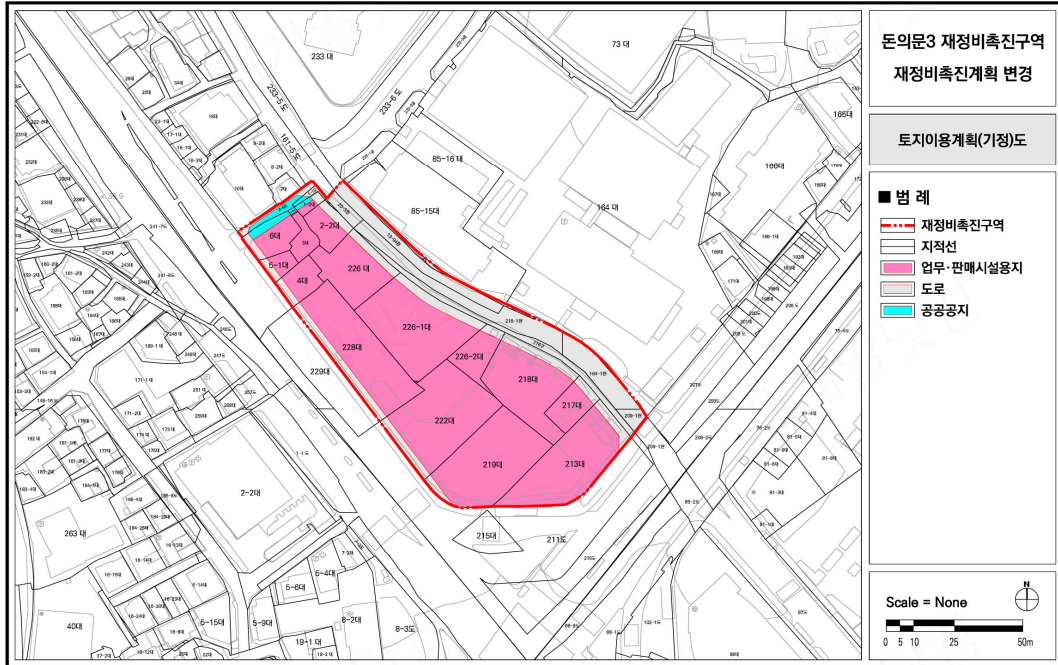
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(변경없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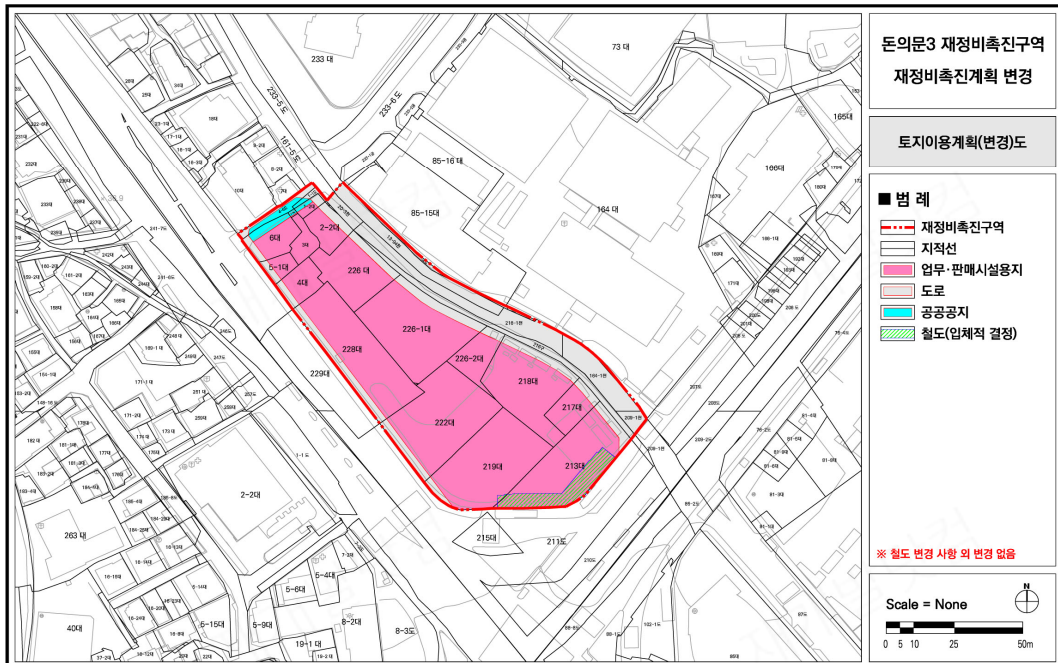
용도지역 결정도(변경없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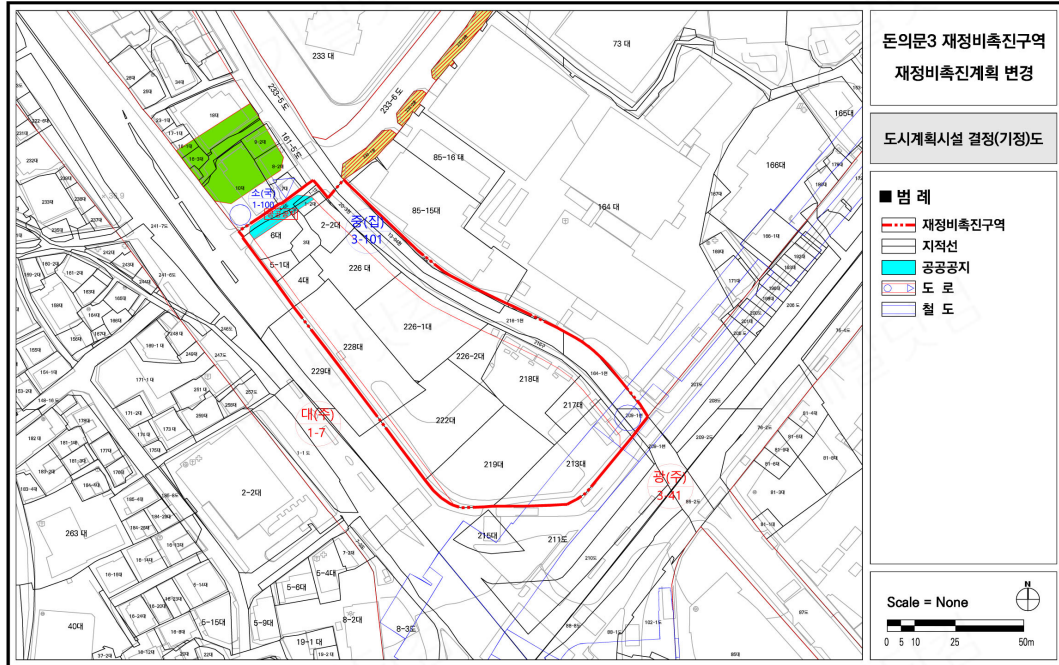
■ 토지이용계획(기정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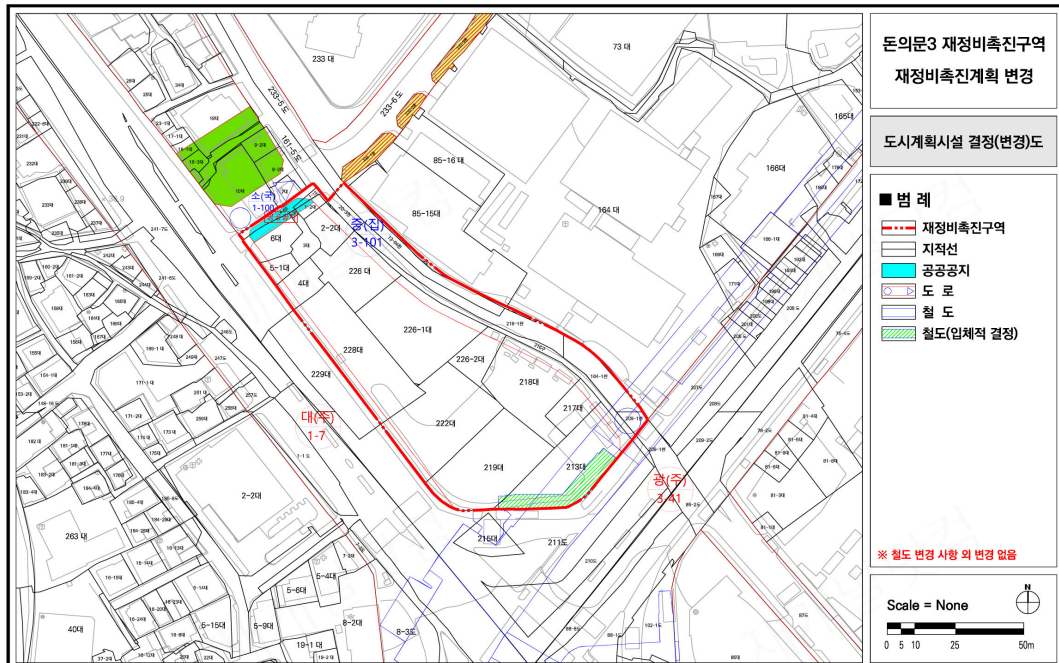
■ 토지이용계획(변경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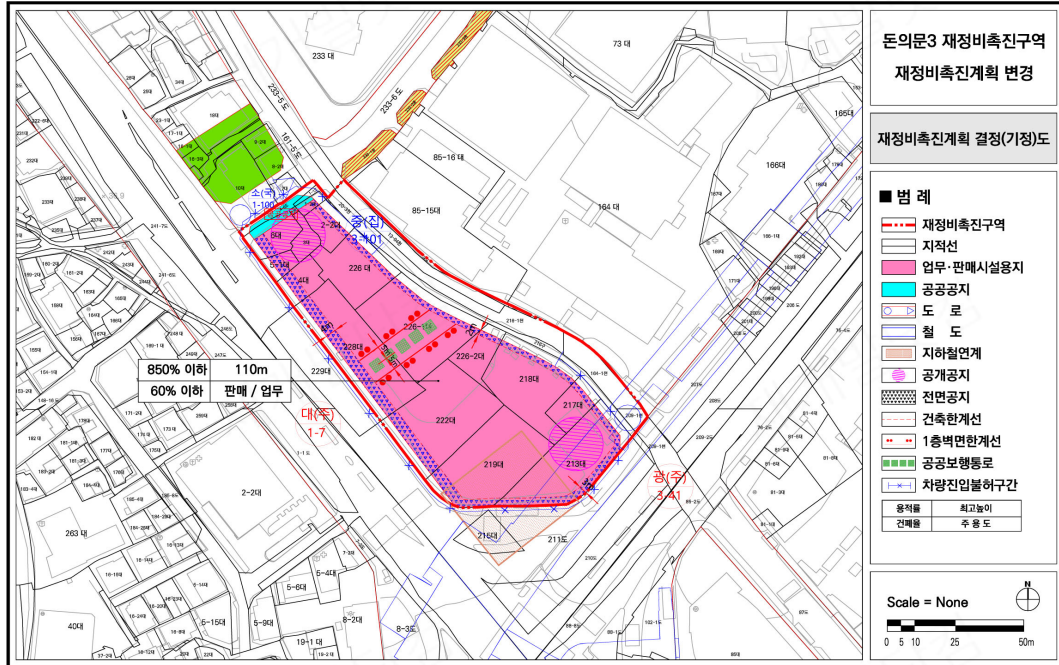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(기정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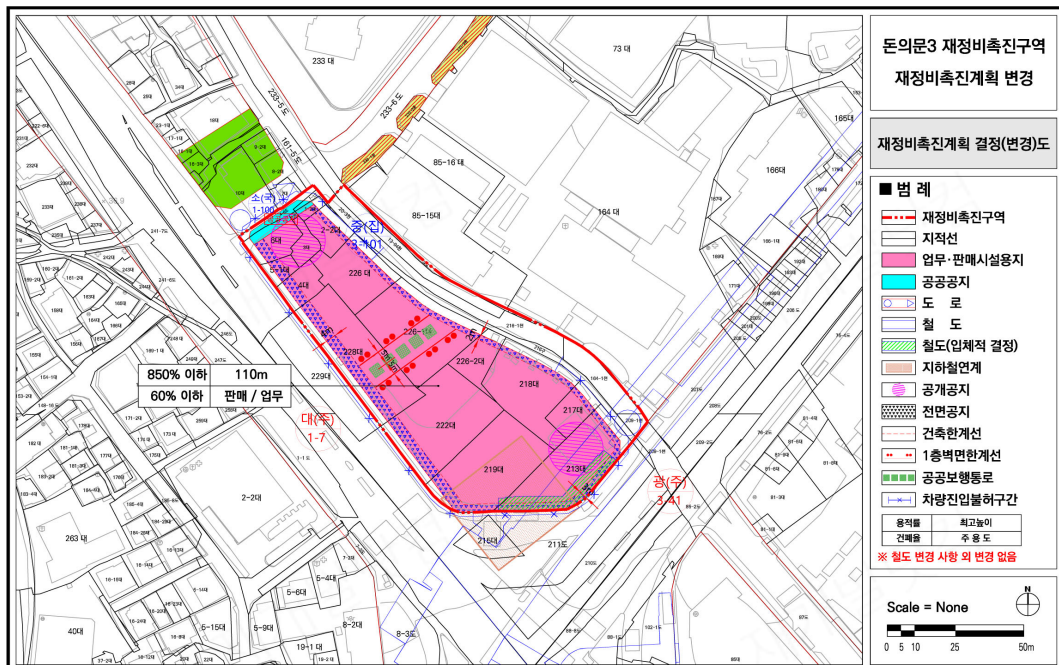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



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기정)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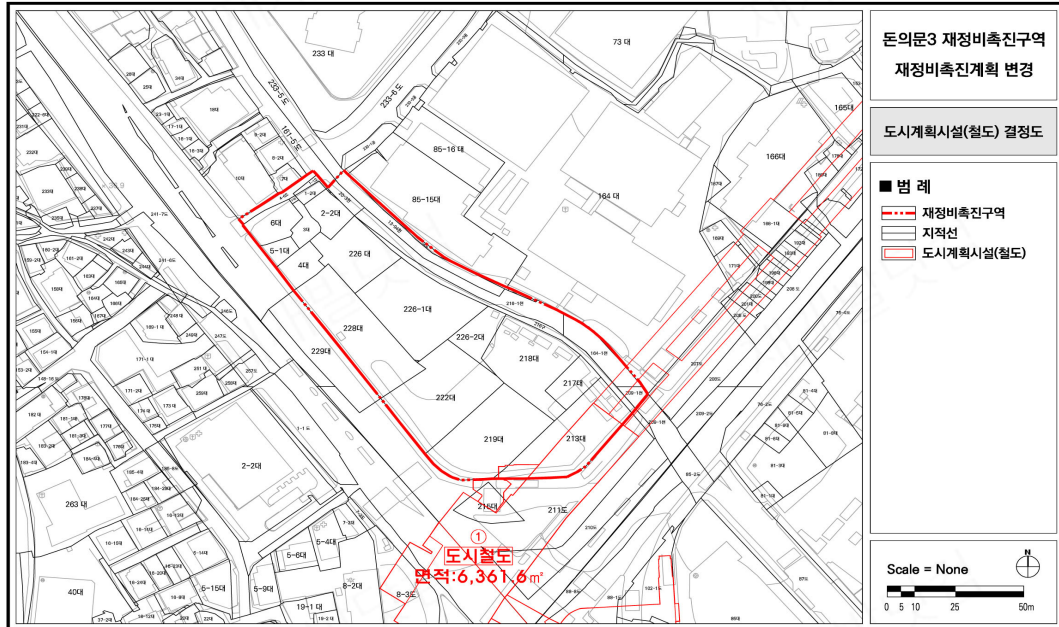


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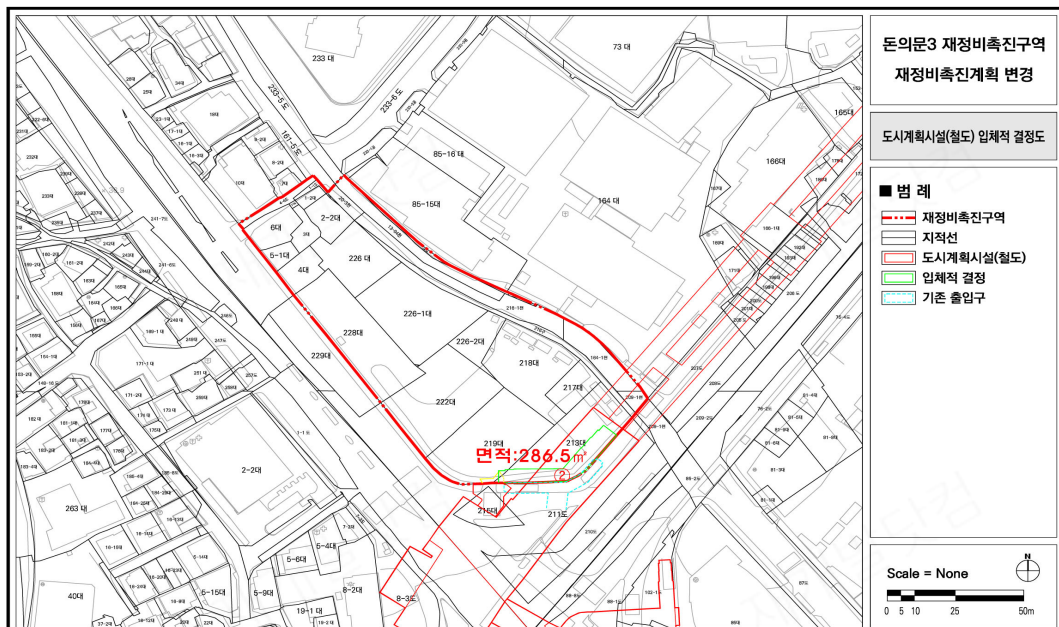


관련도면

■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도



■ 도시계획시설(철도) 입체적 결정도



■ 도시계획시설(철도) 입체적 결정도 (평면도, 단면도)

